

제 호

인삼류 자체검사업체 지정서

업체명:

대표자 성명:

생년월일:

제조장 소재지:

사업자등록번호:

지정 삼(蔘)의 종류:

「인삼산업법」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인삼류
자체검사업체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

직인